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2차 교육위원회)
2020. 7. 15.(수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: 2020년 6월 29일

○ 회부일자: 2020년 7월 2일

3. 제안이유

○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및 「동법 시행령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시키고 각 기관별 역할 및 책무성 강화를 통한 현장 안착 지원

4. 주요내용

○ 조직 구성 및 운영 변경

항목	현 행	변경안
명칭	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	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
운영기관	학교	교육지원청
위원연수 주체	교육감	교육장
조치의 주체	학교의 장	교육장

○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기관장별 책무 사항 수정

- 교육장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책무 추가

- 학교의 장의 조치 이해 협조에 대한 책무 추가

5. 검토의견

-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의 증가로 학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학교폭력 처리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, 기존에 학교에 설치하였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도록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되어, 2020. 3. 1.부터 시행되었음.
- 본 조례 개정안은 이와 같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3조제2항에서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의 책무로 변경하였고, 같은 조에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여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, 안 제3조제3항, 제7조제2항, 제10조 등에서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를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‘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’로 변경하였음.
-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된 취지나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장과 학교장 모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음. 따라서 안 제3조제2항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주체를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변경하도록 개정하기 보다는 교육장과 학교장 모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책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
- 기타 조례 개정안의 취지나 다른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※ 개정된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

관련규정	주 체	조치사항
법 제13조의2	학교장	경미한 학교폭력의 자체 해결
법 제16조	교육장	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
법 제16조 (단서)	학교장	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(조치 후 심의위원회에 보고)
법 제16조의2	학교장	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조치
법 제17조제1항	교육장	가해학생에 대한 조치
법 제17조제4항	학교장	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(조치 후 심의위원회에 보고 및 추인)